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07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 박균택·김문수·주철현

한민수 • 박선원 • 양부남

서영교 • 이성윤 • 이건태

황정아 · 장경태 · 이재강

김승원 · 김용민 · 김현정

전혀희 • 노종면 • 조인철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자를 처벌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피의 사실공표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경찰 등 은 내부 훈령을 통해 피의사실공표의 예외를 규정하여 피의사실을 공 표하고 있음.

수사기관이 법적인 근거도 없는 내부 행정규칙을 명분으로 수사 편의와 관행에 따라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내부 수사정보까지도 무분별하게 유출해 오면서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짐.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행위는 피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위협하며,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

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최근 배우 이선균 씨가 자신의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및 그로 인한 여론재판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음. 또한, 정치인과 관련한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행위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적용 예외를 명확히 구체화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남용을 방 지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 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제1항, 제126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피의사실을"을 "피의사실, 비밀을"로, "공표(公表)한"을 "공표(公表)하거나 누설 또는 유출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죄확산 차단 또는 피해자 양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	제126조(피의사실공표) ①
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u>피</u>	<u>স</u>
<u>의사실을</u> 공소제기 전에 <u>공표</u>	<u>의사실, 비밀을공표</u>
(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公表)하거나 누설 또는 유출한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	
지에 처한다.	
<u> <신 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죄확
	산 차단 또는 피해자 양산 방
	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